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부 위임한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처리 방법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제출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나. ‘지자체장’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4항)

라.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보완 신청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4조의2제1항, 제2항)

마. ‘지자체장’은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안 제4조의2제3항)

바.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4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8. 6.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전화”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

게 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전화”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영 제4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해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u>지방해양수산청장</u>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 ----- ----- ----- ----- 지방 <u>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
<신 설>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u>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u>	④ <u>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u>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④ (생략)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장·군수·구청장-----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

②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영 제4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해야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

	<u>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u>
--	---------------------------